

# 제1778호

2020. 9. 17.(목)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61

# 영등포구보

### 조 례

- 제138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 1
- 제138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 3
- 제139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제139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제139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10
- 제139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제139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13
- 제139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14
- 제139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7
- 제139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입 법 예 고

- 제2020-15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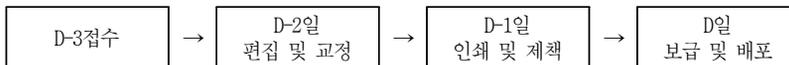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85-2020

**고 시**

- 제2020-1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26
- 제2020-17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7

**공 고**

- 제2020-153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 29

**조 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8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영등포구의 사무위탁기관, 영등포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 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특별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제9조의 특별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89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소유자 등의 책임)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1.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출입·검사 등)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영업자나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9조(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반려동물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체육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90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 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91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로, “아동·여성보호” 를 “아동·여성안전” 으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92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영등포구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영등포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93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9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95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을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병가”를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의2 중 “일수가”를 “일수(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 를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제23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을 “임신기간이”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⑱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⑲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2 중 “제21조제3항·제4항” 을 “제20조의3 제1항·제2항, 제21조의제3항·제4항” 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3항” 을 “제22조” 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휴가일수가” 를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단서 중 “휴가일수가 15일” 을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로 하고, 제2호가목 단서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9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96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6조(사전협의) ①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적·기피·회피 사유(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② 구청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 2.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당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 2.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운영의 시정·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4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9조는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인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1397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55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사용허가의 제한(안 제2조)
- 다. 준수사항(안 제3조)
- 라. 사용료 기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문화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02-2670-3131, 팩스: 02-2670-3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임스퀘어 광장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임스퀘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장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광장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광장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받은 경우
4.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일체의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의 사용은 허가된 기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7. 구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구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광장의 사용 및 시설물의 설치, 철거는 소음 등을 고려하여 07:00 ~ 22:00까지로 제한한다.

제4조(사용료 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광장사용료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사용료	m <sup>2</sup> /시간	10원	
기타	<p>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p> <p>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p> <p>4. 신청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p> <p>※ 행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p>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 임대주택 신축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 동진개발(주) 이우원

나. 주 소 :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3, 5층 500호(영등포동7가, 우성빌딩)

3.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대지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65 외3필지

나. 대지면적 : 2,872.90㎡(+33.90㎡증가)

다.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라. 사업규모

- 층수 : 지하1층/지상17층

- 용도 : 민간임대주택 『준공공 임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236세대』  
/ 근린생활시설 / 주민공동시설

마. 연 면 적 : 11,961.753㎡(+120.28증가)

바. 사 업 비 : 금37,946,085천원

사. 승 인 일 : 2020.09.11.

아. 사업시행기간 : 2018.06월 ~ 2020.5월 → 9월

(사업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 처리현황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신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72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24-1 (영등포동3가) 외 10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폐지고시일 : 2020.9.17.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24-1 (영등포동3가)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0길 9 (영등포동3가)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10길 9-1 (영등포동3가)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 7 (대림동)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6길 6-2 (당산동3가)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6길 6-1 (당산동3가)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5길 12 (당산동1가)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9길 15 (당산동3가)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78길 3 (신길동)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8길 1 (신길동)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5길 4-3 (신길동)	2020-09-14	2020-09-17	대장 말소

<b>공 고</b>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532호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1	서울영등포 제8-1-19호 (2020년)	오택오티스파킹 시스템(유) 강성희	VT3D-60AIK-리프트180턴- 롯데시네마-R1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6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9.08.
2	서울영등포 제8-1-20호 (2020년)	국제기공(주) 이종대	KJ-CT4-S56-대차탑재형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5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9.11.
3	서울영등포 제8-1-21호 (2020년)	국제기공(주) 이종대	KJ-CH4-60-1L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종식)6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9.11.
4	서울영등포 제6-1-24호 (2020년)	쥬신우 유비코스 김문재	SWV2S-SA64-LITD-HTM- OC(64대형,180도ITD)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2020. 09.11.

○ 문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4286